

감사결과보고서

-고창 일반산업단지 확정측량 공동수행자 선정 취소 관련-

감사기간: 2014. 5. 14. ~ 5. 19. (4일간)

감사인원: 2명

지적사항: 2건 (문책1, 통보1)

2014. 5.



청렴윤리부
대한지적공사

I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 목적

- [배경] 2014. 5. 12.(월) 전북일보에 「측량수행자 선정 입찰 하루 전 취소 '논란'」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
- [목적] 공동수행자 선정에 따른 입찰 공고 취소에 대한 언론보도 사실 관계와 전반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확인에 목적을 두었음.

2. 감사대상

전라북도본부, 고창군지사(고창군청 및 참가업체 5개 의견수렴)

3. 감사기간 및 인원 등

- 2014.05.14.(수) ~ 2014.05.19.(월) 4일간 1개 반 2명으로 구성
- 1반: 차장 ○○○, 과장 ○○○

4. 감사 중점사항

-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(견적서) 산출 내용
 - 2013~2014년 목표량 책정 근거
 - 업무수주에 따른 추진활동 일지
 - 견적서 제출 전 수수료 산출
 - 공동수행자 협조 요청 공문 접수 후 검토 절차 등
- 공동수행자 입찰 공고문 취소
 - 지사에서 문서 접수 후 수수료 등 검토
 - 입찰 취소 후 처리 절차
 - 향후 대책 등

II. 감사처분요구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	2-1	감사자	○○○ 외 1인		공 개(○) 비공개()
신분상 조치인원	1	재정상 조치방법	-	재정상 조치 금액	-
수감부서 (처리할부서)	○○○○ 본부 (인사부)	처분요구일자	2014.05.	회신기일	2개월

청 령 윤 리 부 문 책

- 제 목 지적측량업무 관리 소홀
- 관계기관 ○○○○본부 ○○○지사
- 문책종류 경 고
- 대 상 자 기술직 3급 ○○○
- 내 용

「업무규정」 제12조(특수업무의 처리) 제①항 “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특수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업무량과 예산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(측량업의 등록취소 등) 제①항 제12호 “지적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”라고 규정되어 있다. 또한 「사업지원실-1113(2014. 3. 3.)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등 업무처리 철저」 “지적측량수수료 착오 적용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례 발생 시 엄중 조치할 계획“이라고 지시한바 있다.

그런데도 ○○○지사 기술직 3급 ○○○은 「○○ 일반산업단지 지적확정측

량」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수료의 착오적용으로 공사 및 참가업체의 사업추진에 혼선을 주는 등 업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, 이를 근거로 「측량수행자 선정 입찰 하루 전 취소 ‘논란」이라는 제하의 부정적 언론 보도로 공사의 명예와 대외 신뢰도를 현격하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□ 조치 할 사항

사장(인사부장)은 지적측량업무 관리를 소홀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사의 명예를 실추한 관련 직원에게 「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문책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	2-2	감사자	○○○ 외 1인		공 개(○) 비공개()
신분상 조치인원		재정상 조치방법	-	재정상 조치 금액	-
수감부서 (처리할부서)	○○○○ 본부 (○○○○)	처분요구일자	2014.05.	회신기일	1개월

청 럽 윤 리 부 통 보

-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교육 철저
- 관계기관 사장(○○○○장)
- 내 용

「업무규정」 제12조(특수업무의 처리) 제①항 “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특수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업무량과 예산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(측량업의 등록취소 등) 제①항 제12호 “지적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”라고 규정되어 있다. 또한 「사업지원실-1113(2014. 3. 3.)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등 업무처리 철저」 “지적측량수수료 착오 적용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례 발생 시 엄중 조치할 계획“이라고 지시한바 있다.

그런데도 ○○○지사 기술직 3급 ○○○은 「○○ 일반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」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수료의 착오적용으로 공사 및 참가업체의 사업추진에 혼선을 주는 등 업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, 이를 근거로 「측량수행자 선정 입찰 하루 전 취소 ‘논란’ 이라는 제하의 부정적 언론 보도로 공사의 명예와 대외 신뢰도를 현격하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□ 조치 할 사항

사장(○○○○장)은 지적측량업무 처리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수수료 적용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, 공사의 대외 공신력을 현저하게 실추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